

대법원 2018도1654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 등 사건

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권순일)은 2018. 4. 12. 피해자가 삼성그룹 회장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 등 사건에서 **피고인의 상고를 기각**하여, '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 이용촬영 및 공갈범행에 전부 공모하였다'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**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**하였음(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8도1654 판결)

1. 사안의 내용

▣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중 일부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교행위를 몰래 촬영함
-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중 일부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1차 공갈 범행을 저질러 돈을 받음
-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중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공갈 범행을 저질러 돈을 받음
- 기타 공소사실(운전자 상해)

▣ 원심의 판단 → 유죄

- 공범들이 피고인도 카메라 이용촬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, 피고인이 카메라 구입 과정에서 차량과 신용카드를 제공함
- 피고인은 1차 공갈 범행으로 받은 돈을 분배받지는 못하였으나, 공범

들과 범행을 계획하고 돈을 배분받기 위한 계좌번호를 공범들에게 알려줌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

- ▣ 피고인이 카메라 이용촬영 및 1차 공갈 범행에 가담·공모하였는지 여부

나. 판결 결과

- ▣ 상고기각(유죄 확정)

다. 판단 근거

- ▣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음

3. 판결의 의의

- ▣ 피고인이 공범들과 카메라 이용촬영 및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음